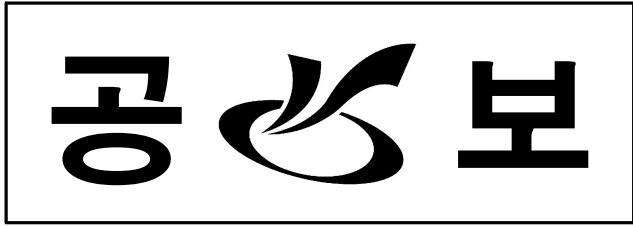


#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 629호  
2008년 3월 21일 금요일

## 차 례

### 규 칙

- 인천광역시서구규칙 제696호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2

###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8-11호 지적측량기준점(지적도근점)고시 ..... 11

###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231호 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검암1근린공원)  
변경(안) 열람공고 ..... 16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234호 국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18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237호 공시송달공고 ..... 19

회 람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기획홍보실

## 규 칙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서구청장권한대행 부 구 청 장 백 인 석

2008년 3월 21일

인천광역시서구규칙 제696호

##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의 범위)** 조례 제4조에 따른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의 범위는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학교와 유치원 및 보육시설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제3조(식재료공급자의 의무)** 식재료공급자는 조례 제2조 제2항에 따라 적합한 식재료를 지원대상기관에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의 공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취지에 맞는 식재료를 공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신청)**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 학교급식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지원신청서와 지원신청기관의 해당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접수받은 구청장은 접수된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인천광역시서구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조례 제4조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신청한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대상기관의 선정,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 품목 선정, 지원규모 등을 심의·의결한다.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의 사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학교급식 실태, 지원신청에 따른 산출근거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되, 학교급식지원업무담당이 된다.

**제9조(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계획 확정)**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의 학교급식 지원금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체계)**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지원계획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서부교육청 교육장 및 인천광역시 교육청 교육감, 보육시설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 ② 지원계획을 통보받은 서부교육청 교육장 및 인천광역시 교육청 교육감은 관내 지원대상기관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지원계획을 통지한다.
- ③ 지원계획을 통지받은 지원대상기관은 지원계획으로 통지된 예산지원 계획 범위 안에서 예산회계 관련규정 등에 의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구입 사용하되, 식재료 공급자에게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공급확인서를 발부함과 동시에 사본은 분기별로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공급확인서를 발부받은 식재료 공급자는 지원대상기관이 발부한 공급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지원대상기관에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한다.

**제12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기관에 당해연도 사업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시 또는 분기별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기관은 학교급식 지원계획 금액의 범위 안에서 식재료공급확인서와 식재료 공급자의 공급비용 지급신청서를 확인하여 월별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학교급식 식재료비는 조례 제2조에 따른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함에 따른 추가 발생경비(차액)에 한해서 지원한다.

④ 제1항의 보조금 교부는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조례」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에 의한다.

**제13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 및 관계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우수농수산물 학교급식 지원신청내역

(단위: 천원)

시설명 (학교명)	이용인원 (명)		전년도 급식비 내역			전년도 식재료비(식품비) 사 용 금 액			금년도 식재료비(식품비) 사 용 계 획(천원)			지 원 요 청 금 액		
	정원	현원	계	식재료비	기 타 경 비	계	일 반 농 수 산 물	우 수 농 수 산 물	수 입 농 수 산 물	계	일 반 농 수 산 물		우 수 농 수 산 물	수 입 농 수 산 물
소계														
000														
000														
000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안전한 우수 농수산물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신청내역 심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서구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우수농수산물 학교급식비 지원확정 내역 (제11조 제1항 관련)

(단위 : 천원)

학 교 별 (시 설 별)	지 원 대 상 개 소 수	학 생 수 (명)			지 원요청 금 액	지 원확정 금 액	비 고
		계	급식	비급식			
계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별지 제4호 서식]

## 우수농수산물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계획 (제11조 제2항 관련)

### <보육시설 · 유치원>

(단위 : 천원)

시 설 별	학생수 또는 이용인원(명)		지원확정 금 액	비 고
	급 식	비 급 식		

※ 심의위원회 심의내용 등 세부 시행계획은 별도시달

### <초·중·고등·특수학교>

(단위 : 천원)

학 교 별 (시 설 별)	학생수 또는 이용인원(명)			지원확정 금 액	비 고
	계	급식학생수	비급식학생수		

※ 심의위원회 심의내용 등 세부 시행계획은 별도시달

[별지 제5호 서식]

## 우수농수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확인서

공급받은자	주 소			
	학교 또는 시설명		대표자 (시설장)	
식재료 공급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성 명	
식재료비 총 공급내역(계획)		총 공급내역 중 우수 농산물 식재료 공급내역(금회/누계)		
공급기간	금액(원)	품 목	수 량 (kg)	금 액 (원)
계			/	/
			/	/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한 우수 농수산물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학 교 장                      직인  
    또는  
   대 표 자                      (인)

공급자

주 소  
 상 호  
 성 명    (인)

[별지 제6호 서식]

## 우수 농수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신청서

지 원 신청자	주 소								
	상 호					대표자성명			
공급내역 및 지원신청 금 액	공급기관 또는 시설명	공급 기간	식재료 공급내역			공급식재료 중 우수식재료 공급내역			지 급 신청금액 (원)
			품 목	수량 (kg)	금액 (원)	품목	수량 (kg)	금액 (원)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한 우수농수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성 명

학교장(시설장) 귀하

※ 구비서류 :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사실 확인서 및 납품확인서

# 고 시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8-11호

## 지적측량기준점(지적도근점) 고시

인천 서구 오류지구 일원 및 원창동 일원에 설치한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하여 지적법 제38조, 동법시행령 제4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9조(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고시 등)의 규정에 의거 지적측량기준점(오류지구일원 : 지적도근점 47점, 원창동일원 : 7점)을 고시 합니다.

2008년 3월 18일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 ■ 개 요

- 1. 지적도근점의 명칭 및 번호(이하 좌표와 같음)
- 2. 좌표

일련번호	명칭	좌표	
		X좌표(m)	Y좌표(m)
【 별지 】 참조			

#### 3. 소재지와 측량연월일

- 소재지 : 인천 서구 오류지구 일원  
(측량연월일 : 2007년 4월 4일)
- 소재지 : 인천 서구 원창동 일원  
(측량연월일 : 2007년 12월 4일)

#### 4. 측량성과보관장소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 또는 대한지적공사 인천광역시본부 서구지사

■ 열람안내

- 지적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측량기준점 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분은 토지정보과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별 지 】

일련번호	명 칭	좌 표		
		원점	X 좌표(m)	Y 좌표(m)
5250	지적도근점	중부	455441.72	169392.42
5251	지적도근점	중부	455322.23	169168.47
5252	지적도근점	중부	455189.04	169097.56
5253	지적도근점	중부	455109.04	168940.88
5254	지적도근점	중부	455021.76	168821.87
5255	지적도근점	중부	454961.72	168747.24
5256	지적도근점	중부	454807.81	168615.17
5257	지적도근점	중부	454760.37	168561.45
5258	지적도근점	중부	454556.32	168275.56
5259	지적도근점	중부	454380.42	168085.08
5260	지적도근점	중부	454660.96	168093.97
5261	지적도근점	중부	454628.12	167786.02
5262	지적도근점	중부	454593.29	167736.41
5263	지적도근점	중부	454559.17	167498.21
5264	지적도근점	중부	454610.33	167375.74
5265	지적도근점	중부	454604.09	167268.78
5266	지적도근점	중부	454623.43	167187.78
5267	지적도근점	중부	454680.89	167179.20
5268	지적도근점	중부	454792.63	167031.75
5269	지적도근점	중부	454777.87	166776.93

일련번호	명 칭	좌 표		
		원점	X 좌표(m)	Y 좌표(m)
5270	지적도근점	중부	454791.68	166586.39
5271	지적도근점	중부	455019.19	166688.09
5272	지적도근점	중부	455193.91	166821.02
5273	지적도근점	중부	455204.86	166940.14
5274	지적도근점	중부	455152.19	167017.70
5275	지적도근점	중부	455117.77	167072.00
5276	지적도근점	중부	455110.59	167193.19
5277	지적도근점	중부	455005.36	167436.81
5278	지적도근점	중부	454996.87	167536.09
5279	지적도근점	중부	454988.21	167662.58
5280	지적도근점	중부	455081.87	167701.78
5281	지적도근점	중부	455175.63	167633.34
5282	지적도근점	중부	455244.73	167700.10
5283	지적도근점	중부	455299.07	167808.60
5284	지적도근점	중부	455396.47	167817.87
5285	지적도근점	중부	455486.53	167844.82
5286	지적도근점	중부	455557.78	167943.57
5287	지적도근점	중부	455630.20	168116.15
5288	지적도근점	중부	455423.03	168260.89
5289	지적도근점	중부	455337.46	168214.35

일련번호	명 칭	좌 표		
		원점	X 좌표(m)	Y 좌표(m)
5290	지적도근점	중부	455244.03	168261.46
5291	지적도근점	중부	455007.51	168353.35
5292	지적도근점	중부	454927.14	168369.20
5293	지적도근점	중부	454836.79	168449.13
5294	지적도근점	중부	454783.62	168361.62
5295	지적도근점	중부	455917.51	168412.69
5296	지적도근점	중부	455898.27	168271.25
6004	지적도근점	계양	-6084.90	-9736.16
		중부	444072.62	164960.31
6005	지적도근점	계양	-6338.69	-9703.32
		중부	443818.74	164992.47
6006	지적도근점	계양	-6282.12	-9418.44
		중부	443874.55	165277.51
6007	지적도근점	계양	-6275.45	-9150.75
		중부	443880.51	165545.22
6008	지적도근점	계양	-6259.84	-8914.02
		중부	443895.49	165781.99
6009	지적도근점	계양	-6097.10	-9018.35
		중부	444058.51	165678.10
6010	지적도근점	계양	-5916.67	-9097.05
		중부	444239.15	165599.88

# 공 고

인천광역시서구청공고 제2008-231호

## 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검암1근린공원) 변경(안) 열람공고

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검암1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검여 유희강 선생 자료관 건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열람공고 하오니 이해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공고 기간내(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560-4782)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3월 18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 공고내용

-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검암1근린공원) (변경)(안) 조서
- 총괄조서

시설 구분	시설내용	부지면적(m <sup>2</sup> )			공원 시설면적(m <sup>2</sup> )			규모(개소)			건축면적(m <sup>2</sup> )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계		12,475.2	12,475.2	-	3,848.2	4,211	△362.8	32	33	△1	1,847.3	2,010.1	△162.8	
공원 시설	도로 및 광장	602.7	802.7	△200	602.7	802.7	△200	-	-	-	-	-	-	변경
	조경 시설	245.7	245.7	-	245.7	245.7	-	1	1	-	-	-	-	
	운동 시설	1,907.3	1,907.3	-	1,907.3	1,907.3	-	7	7	-	1,847.3	1,847.3	-	
	편의 시설	1,092.5	1,092.5	-	1,092.5	1,092.5	-	12	12	-	-	-	-	
	관리 시설	-	-	-	-	-	-	12	12	-	-	-	-	
	교양 시설	검여 유희강선생 자료관	-	162.8	△162.8	-	162.8	△162.8	-	1	△1	-	162.8	△162.8
그 밖의 시설	녹지	8,627	8,264.2	▽362.8	-	-	-	-	-	-	-	-	-	변경

- 시설물조서

시설 구분	시설내용	기정				변경				비고
		규모	구조	건축면적(m <sup>2</sup> )	연면적(m <sup>2</sup> )	규모	구조	건축면적(m <sup>2</sup> )	연면적(m <sup>2</sup> )	
계		-	-	-	-			162.8	162.8	
공원 시설	검여 유희강 선생 자료관	-	-	-	-	지상1층	철근 콘크리트	162.8	162.8	

- 공람도면 :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개발과 비치
-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234호

## 국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성 명 : 신화환경(주) 황병용 외 2명
2. 주 소 : 붙임 참조
3. 서류명칭 :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서
4. 공고기간 : 2008. 3. 20 ~ 2008. 4. 3 (15일간)
5.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 【재무과 재산관리팀 032)560-4163】

2008년 3월 20일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국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내역

대 상 자		공 시 송 달 내 역			
성 명	주 소	공시송달명	무단점유 현 황	부과기간	부과예정 액
황병용 (신화환경(주))	인천.서.가정 534-18 전운빌라 201호	국유재산 변상금 사전 통지서 송달	인천. 서. 경서동 486-1	'06.1.1~ '07.12.31	8,925,160
박 종 화	인천.서.연희동 731-15 서부 2차(아)A-201	국유재산 변상금 사전 통지서 송달	인천. 서. 심곡동 325-5	'07.1.1~ '07.12.31	3,453,680
정 구 현	인천.서.연희동 432 -8	국유재산 변상금 사전 통지서 송달	인천. 서 연희동 428-47, 428-66	'07.1.1~ '07.12.31	188,800

## 공 시 송 달 공 고

###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29조 및 제34조 규정을 위반하여 적발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동법 제84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코자 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 부재, 이사감 및 장기간 방치 등으로 송달할 수 없었기에,
2.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간내 의견진술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3월 20일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공고기간 : 2008.3.20 ~ 2008.4.4 (15일간)

의견제출대상 및 통지사항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			
2. 당사자	성 명 (차량번호)	문영호외 2인 ( “불임” 위반차량내역 참조)		
	주 소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불임” 참조)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과태료 부과 및 점검·정비·원상복구 명령			
5. 법 적 근 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제37조			
6. 의 견 제 출	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담당부서명	교통민원과
	주 소	인천시 서구 서곶길 323(심곡동 244) (☎ 560-4872, FAX 560-4869)		
	기 한	2008년 4월 4일까지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 컴퓨터통신, FAX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yut2000@seo.incheon.kr)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도 의견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위반차량내역

연 번	당 사 자		위 반 사 항			비 고
	성 명	주 소 (사용본거지)	차량번호	위반내용	위반법규	
1	문영호	인천시 서구 가정1동 290-37(3/5) 일진그랜드맨션 3동 402호	인천31 무8074	후등화렌즈착색	제29조 제1항	
2	임한석	인천시 서구 석남1동 497-16(32/1) 301호	인천32 다4480	후등화렌즈착색	제29조 제1항	
3	김영배	인천시 서구 검암동 628 (14/2) 삼보해피하임 402동903호	인천33 루2533	철제보조범퍼설치	제29조 제1항	